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(AI)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.
- 이를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, 인공지능(AI)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관 명칭을 ‘서울AI재단’으로 변경함(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조례의 목적과 재단의 사업에 인공지능(AI) 관련 내용을 명시함(안 제1조, 안 제4조)
- 다. 약칭 용어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미반영)
 - (개선의견) 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지원 기업의 범주를 현행 중소기업, 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, 여성기업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까지 확대하여 명시할 것을 제안
 - (미반영 사유) 금번 조례 개정 취지는 기관 명칭 변경과 인공지능(AI)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업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, 개선의견은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예정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원기철 (☎ 2133-291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첨단”을 “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”으로, “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”를 “서울AI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 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디지털재단”을 “서울AI재단”으로, “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첨단”을 “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”으로, “정책연구 및 컨설팅”을 “정책연구, 컨설팅, 교육, 문화확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벤처기업”을 “벤처기업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
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디지털”을 “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법인”을 “재단”으로 한다.

3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투자출연기관, 시민 대상 인공지능(AI)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

제9조제3항 중 “부득이 한”을 “부득이한”으로, “기재순”을 “기재 순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”를 “관한 자문을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전단 중 “대하여 재단”을 “재단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”을 “재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”으로, “그”를 “재단의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 4”로,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8호마목 중 “서울디지털재단”을 “서울AI재단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“서울디지털재단”을 “서울AI재단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서울특별시 재단법인</u> <u>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</u> <u>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첨단</u>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,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<u>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<u>서울디지털재단</u>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<u>첨단</u>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	<u>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</u> <u>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AI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 데</u> ----- -----. 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서울AI재단</u>----- ----- -----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. 제4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. 1. <u>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</u>

도시 분야 <u>정책연구 및 컨설팅</u>	----- <u>정책연구, 컨설팅, 교육, 문화 확산</u>
2.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도시 관련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)과 <u>벤처기업 지원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벤처기업</u> 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) ----- --
3. <u>서울시, 투자출연기관,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</u>	3.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투자출연기관, 시민 대상 인공지능(AI)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</u>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6. <u>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</u>	6. <u>인공지능(AI)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</u> 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<u>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/u>	8. ----- <u>재단</u> ----- -----
제9조(이사회) ①·② (생 략)	제9조(이사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장이 <u>부득이 한</u>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<u>기재순</u> 으로 그 직무를 대	③ ----- <u>부득이한</u> ----- ----- ----- --- <u>기재 순</u> -----

행한다. ④ (생략) 제10조(자문위원단)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<u>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</u>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. 제12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 제13조(기금 및 출연금 등) ① (생략)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제14조(수익사업)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제16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<u>서울특별시</u>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 제18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·② (생략)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	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자문위원단) ----- ----- <u>관한 자문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2조(기본재산의 조성) ----- ----- <u>시의</u> ----- ----- -----. 제13조(기금 및 출연금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. 제14조(수익사업)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 제16조(사업연도) ----- --- <u>시</u> ----- -----. 제18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--	--

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
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
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19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필
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
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
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
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20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
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
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
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
파견할 수 있다.

재단-----
-----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지도·감독) ① -----

----- 재단의 이사장
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
무원 -----
----- 재단의 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공무원의 파견) -----

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
4----- 소속 공무원--
-----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, 현재 수행 중인 인공지능(AI)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무에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으로,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-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행정6급 원기철